

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10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2

다. 상정일자 :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8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. 1. 12 전문개정되어 2001. 1.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
-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·납골의 장려와 장사시설의 설치·관리에 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 강구·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.
-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수립하고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·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는 도에 보고 및 협의토록 함.
-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,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및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-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준용함
-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,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.

○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후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, 납골의 장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와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,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을 지원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,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